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효력발생일: 2011년 1월 28일

▶ **투자신탁명:**

54-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
▶ **주요변경사유:**

-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(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 추가에 따른 변경
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
▶ **변경내용:**

| 항 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
|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| | (추가) 9.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기기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.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, 전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본문 중 전환에 관한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|
| 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| | |
| 5. 분류 마. 특수형태 표시 | 종류형 모자형 | 종류형 모자형 <u>전환형(복수의 집합투자기구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)</u> |
| | | 모자펀드 표에 자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|
| 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| | |
| 3. 수익구조 | | 자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|
| 4. 주요투자위험 | | (문구추가) 이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(투자원금손실위험,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, 환율변동 위험), 모투자신탁의 |

| | | |
|---|---------|--|
| | | <p>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(분산투자관련위험, 신흥시장위험, 파생상품투자위험, <u>재간접투자위험,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,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, 신용디폴트스왑(CDS) 투자위험</u>) 및 기타 투자위험(유동성위험, 환매위험,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, 해지위험)이 있습니다.</p> |
| 6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| 장성문 | <u>이정민</u> |
| 6. 운용전문인력 나. 모투자신탁의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 | | <p>(문구추가) <u>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기준통화는 미달러이며 모투자신탁은 원-미달러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를 실시합니다. 이러한 헤지거래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팀에서 담당합니다.</u></p> |
| 4. 전환절차 및 방법 | 해당사항 없음 | <p>(추가) <u>(1) 수익증권의 전환</u></p> <p><u>(가)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(이하“전환”이라 합니다)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(나)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합니다.</u></p> <p><u>①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</u></p> <p><u>(2) 수익증권의 전환방법 및 절차</u></p> <p><u>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.</u></p> |

| | | |
|--|--|---|
| | | <p>(가) <u>전환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3영업일(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8영업일(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)에 환매합니다. 다만,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10영업일(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11영업일)까지 환매합니다.</u></p> <p>(나) <u>전환시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8영업일(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8영업일(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)에 매수합니다. 다만, 위 (가) 항 단서에 따라 환매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환매금이 지급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당일 매수합니다한다.</u></p> <p>(3) <u>전환관련 유의사항</u></p> <p>(가) <u>수익자가 전환대상 투자신탁 간에 전환을 하는 경우,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 간에만 전환이 가능합니다.</u></p> <p>(나) <u>수익자는 판매회사가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판매하지 않거나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 이전에 전환을 원하는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해당 수익증권이 판매회사에서 판매되고</u></p> |
|--|--|---|

| | | |
|--|--|--|
| | | <p>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<u>(다) 전환시 “III. 1. 수수료 및 보수”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/환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수익자가 다른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에 따라 취득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전환처리일을 매수일로 하여 “III. 1. 수수료 및 보수”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.</u></p> <p><u>(라) 수익자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판매회사 정책이나 전산 시스템 등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판매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</u></p> <p><u>(마) 위 11. 나. (4)의 환매관련 유의사항은 전환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u></p> <p><u>(바) 수익자는 투자대상 투자신탁 간에 전환하는 경우 환매의 경우에 준하여 당초 보유하고 있던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이익에서 관련 보수,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u></p> |
|--|--|--|